

# 북한의 세계경제기구 가입에 관한 법적 쟁점

- WTO가입을 중심으로 -

고준성



# 북한의 세계경제기구 가입에 관한 법적 쟁점

- WTO가입을 중심으로 -

고 준 성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Contents

I	분석을 위한 기초	1. WTO 출범 이후 신규 회원 가입 현황	1
		2. WTO 가입의 동기 및 이유	3
		3. 북한의 WTO 가입 논의 및 준비 필요성	4
		4. 분석의 범위 및 방법	5
II	WTO 가입 관련 법·실행 및 관련 법적 쟁점 분석	1. WTO 가입(절차 등) 관련 법 및 실행	7
		2. WTO 가입문서의 법적 지위	10
		3. WTO에서의 가입 신청국의 개도국/최빈 개도국 지위	11
III	북한의 WTO가입 협상에서 제기될 주요 이슈별 법적 분석	1. 가입 협상 의제 개관 및 분석 대상 의제 선정 기준	17
		2. 상품무역 관련 법·정책 쟁점	18
		3. 서비스무역관련 법·정책 쟁점	34
		4. 외국인투자제도·정책 쟁점	35
		5.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법제 쟁점	37
IV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대응 과제	1. 정책적 시사점	41
		2. 향후 대응 과제	42



## I. 분석을 위한 기초

### 1. WTO 출범 이후 신규 회원 가입 현황

- 종전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를 대체하여 1995년 새로이 출범한 다자간무역체제인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에는 2018년 12월 기준 그 회원 수가 164개에 달하며, 이 가운데 WTO 출범 이후 가입한 신규 회원 수는 36개이다. 이들 36개 신규 회원국의 회원 지위를 보면 선진국 회원 가입국이 5개이며, 최빈 개도국(Least-Developed Country: LDC)<sup>1)</sup> 회원 가입국이 6개 그리고 개도국(Developing Country) 회원 가입국 수가 25개로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sup>2)</sup> 이밖에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이란, 이라크 등 22개 국가가 WTO 가입을 신청한 후 현재 가입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 WTO 신규 가입 회원국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가입 당시 비시장경제(non-market economies) 지위를 부여받은 회원이 Georgia(2000년), 중국(2001년), 아르메니아(2003년), 캄보디아(2004년), 베트남(2007년), 타지키스탄(2013년) 및 카자흐스탄(2015년) 등 7개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sup>3)</sup> 이러한 비시장경제체제 국가는 시장에 대해 정부가 상당한 정도로 개입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중앙계획경제(centrally planned economies) 국가들이다.

1) 이는 직역하면 “최저개발국”이지만 내용상 “최빈개도국”으로 옮긴 외무부 번역본을 따랐다. 외무부,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7000-25240-57-9434, 1994.

2) WTO Homepage, WTO membership→accessions→protocols of accessions, Protocols of accession for new members since 1995, including commitments in goods and services,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acc\\_e/completeacc\\_e.htm](https://www.wto.org/english/thewto_e/acc_e/completeacc_e.htm).

3) Dylan Geraets,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 Legal Analysis, 2018, pp.247-248.

〈표 1〉 WTO 출범 이후 신규 회원 가입 및 가입국의 지위별 현황과 가입문서에서의 약속 건수

국가명	WTO 가입일	회원 지위	비시장경제 (NME) 지위 부여	WTO 가입작업반 보고서에서의 약속 건수
		선진국(Developed) /개도국(Developing:DC) 또는 최빈국 (Least-Developed Country:LDC)		
Ecuador	21 January 1996	DC	No	21
Bulgaria	1 December 1996	Developed	No	35
Mongolia	29 January 1997	DC	No	17
Panama	6 September 1997	DC	No	24
Kyrgyz	20 December 1998	DC	No	29
Latvia	10 February 1999	Developed	No	22
Estonia	13 November 1999	Developed	No	24
Jordan	11 April 2000	DC	No	29
Georgia	14 June 2000	DC	NME	30
Albania	8 September 2000	DC	No	29
Oman	9 November 2000	DC	No	26
Croatia	30 November 2000	Developed	No	27
Lithuania	31 May 2001	Developed	No	28
Moldova	26 July 2001	DC	No	28
China	11 December 2001	DC	NME	139 (가입의정서 포함)
Chinese Taipei	1 January 2002	DC	No	63
Armenia	5 February 2003	DC	NME	39
FYR Macedonia	4 April 2003	DC	No	24
Nepal	23 April 2004	LDC	No	25
Cambodia	13 October 2004	LDC	NME	29
Saudi Arabia	11 December 2005	DC	No	59
Viet Nam	11 January 2007	DC	NME	70
Tonga	27 July 2007	DC	No	29

국가명	WTO 가입일	회원 지위	비시장경제 (NME) 지위 부여	WTO 가입작업반 보고서에서의 약속 건수
		선진국(Developed) /개도국(Developing:DC) 또는 최빈국 (Least-Developed Country:LDC)		
Ukraine	16 May 2008	DC	No	63
Cape Verde	23 July 2008	DC	No	26
Montenegro	29 April 2012	DC	No	35
Samoa	10 May 2012	LDC	No	37
Russia	22 August 2012	DC	No	163
Vanuatu	24 August 2012	LDC	No	30
Lao PDR	2 February 2013	LDC	No	26
Tajikistan	2 March 2013	DC	NME	40
Yemen	26 June 2014	LDC	No	28
Seychelles	26 April 2015	DC	No	40
Kazakhstan	30 November 2016	DC	NME	118
Liberia	14 July 2016	DC	No	31
Afghanistan	29 July 2016	DC	No	37

출처: Gerates, 상계서, Table 5.1을 기초로 필자가 수정 보완

## 2. WTO 가입의 동기 및 이유

- WTO 가입은 기존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 및 기존 제도의 상당 부분을 포기함으로써 비효율적인 국내산업을 경우 수입품과의 경쟁에서 퇴출될 수 있는 등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 있다. 특히, 비시장경제 체제를 가진 신규 가입 신청국들의 경우 WTO협정은 물론 가입 협상 과정에서 제시한 추가적인 약속(additional commitments)의 이행을 위해서는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 전환이라는 개혁을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SOEs)을 민영화해야 하는 과제 등 상당한 비용과 부담을 치러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여러 비시장경제국들이 WTO에 가입하였다. 비록 가입 협상 과정에서 비시장경제 지위의 부여를 피하기는 하였지만 러시아 역시 비시장경제 체제에 속한 국가임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대다수 개도국과 최빈 개도국 나아가 비시장경제체제국들까지도 WTO에 가입하고자 하는 동기 및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WTO 다자간무역체제의 출범으로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가 진전되면서 WTO 가입에 따른 최혜국(MFN) 관세 부여 등과 같은 비차별대우를 보장받게 됨으로써 해외시장에 안정적인 접근을 통해 무역 확대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WTO 가입은 신청국의 무역제도를 비롯한 광범위한 제도 개혁을 수반하는데, 이를 통해 법의 지배와 투명성 등을 제고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는 중국 및 베트남 등의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 3. 북한의 WTO 가입 논의 및 준비 필요성

- 북한은 핵실험 등으로 인해 UN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장기간의 경제제재를 받은 결과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교역 제외) 규모는 전년대비 15% 감소한 55.5억 달러에 불과하고, 수출은 37.2% 감소한 17.7억 달러를 기록한 반면에 수입은 1.8% 증가하여 37.8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수지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악화하여 20.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7년 기준 국별 교역비중에서 중국이 94.8%로 중국에 편중된 기형적인 교역구조를 갖게 되었다.<sup>4)</sup> 이는 북한의 경제 및 산업구조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남북한 간 교류협력 나아가 경제통합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대외개방을 통한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수출의 확대 및 다변화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WTO 및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경제기구에의 가입 등을 통한 국제경제 질서에서의 참여가 절실하고 긴요하다. 그런데 그간 WTO에의 신규 가입에는 평균 10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더욱이 북한은 비시장경제 체제일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폐쇄경제 체제를 유지해 온 관계로 가입 준비에 훨씬 많은 준비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북핵의 해결을 위한 북미간 대화의 진전을 기대하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

4) Kotra, 2017 북한 대외무역 동향, 2018, 1쪽.

이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교역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가교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고, 이 점에서 북한의 WTO 가입을 위한 제반 법적 쟁점 및 이슈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개시될 수 있는 북한의 WTO 가입 협상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 4. 분석의 범위 및 방법

- 본 분석에서는 먼저 WTO 가입 관련 법 및 실행을 살펴보고, WTO 가입 협상 결과 채택된 제반 문서의 법적 지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WTO 가입시 개발도상국 내지 최빈 개도국 지위는 어떻게 인정받는 것인지 그리고 이에 따른 특혜대우는 무엇인지를 살펴본 후 이를 기초로 북한의 경우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향후 북한이 WTO 가입을 신청할 것을 가정하고, 북한의 WTO 가입 협상 시 제기될 수 있는 제반 이슈들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WTO 출범 이후 신규 가입한 회원국 가운데 비시장경제체제이었던 국가들의 가입 협상 결과인 가입작업반 보고서 및 가입의정서 등을 기초로 이슈별로 이들 국가의 약속 현황 등을 분석하고, 북한의 경우를 검토하고자 한다.



## II. WTO 가입 관련 법·실행 및 관련 법적 쟁점 분석

### 1. WTO 가입(절차 등) 관련 법 및 실행

- 먼저 WTO의 회원(Member)<sup>5)</sup>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원회원(原會員)<sup>6)</sup>이고 다른 하나는 가입에 의한 회원이 그것이다. WTO 회원이 될 자격에는 국가 이외에도 자신의 대외무역관계 및 WTO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에 규정된 그 밖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한 독자적인 관세영역(separate customs territory)도 인정된다.<sup>7)</sup>
- 본 분석의 대상인 가입(accession)에 의한 회원이라 함은 가입하려는 회원과 WTO간에 합의된 조건에 따라 WTO협정에 가입한 실체를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i) 원회원이 될 자격을 가졌으나 협정의 수락을 위한 개방 시한인 1996년 12월 31일 이후에야 동 협정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표시한 실체와 (ii) 원회원이 될 자격이 없는 관계로 별도의 가입 절차를 통해 회원이 된 실체-이는 독자적인 관세영역을 포함하기 위한 표현이나 아래에서는 상황에 따라 회원(국), 국가 등을 혼용하기로 한다-로 구분된다.<sup>8)</sup> 이와 같이 신(新)회원(new members)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을 신청한 국가와 WTO 사이에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 협정(이하 ‘WTO 설립협정’)에 가입할 수 있고, 이러한 가입은 WTO 설립협정 및 동 협정에 부속된 다자간무역협정에 대하여 적용된다.<sup>9)</sup> 신규 회원의 가입은 각료회의가 결정하는데, 각료회의는 WTO 회원(국) 3분의 2 다수결에 의하여 가입조건에 관한 합의(agreement)를 승인한다.<sup>10)</sup>

5) 참고로 1947년 GATT에서는 회원 대신에 “계약당사자”(contracting party)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6) 原會員(original members)이라 함은 1994년 GATT에 대한 양허약속표(Schedules of Concessions and Commitments) 및 GATS에 대한 구체적 약속양허표(Schedules of Specific Commitments)를 첨부하여 WTO협정 및 다자간무역협정을 수락함과 동시에 동 협정의 발효일인 1995.1.1, 이전까지 1947년 GATT의 계약당사자인 실체를 가리킨다. WTO 설립협정 제11조 1항.

7) WTO 설립협정 제12조 1항. 여기에는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ies: EC)도 포함된다. 따라서 WTO “Member”를 “회원국”으로 번역하는 것은 협정의 의미를 축소하는 결과가 되어 정확한 표현이라 할 수 없으나 현실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회원이 국가인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회원(국)이란 표현을 병용하기로 한다.

8) WTO 설립협정 제12조1항, 제14조1항.

9) WTO 설립협정 제12조1항. 참고로 복수국간무역협정에의 가입은 동 협정의 규정에 따른다. WTO 설립협정 제12조3항. 따라서 별도의 가입 의사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

10) WTO 설립협정 제12조2항.

- 한편, 가입에 관해 규정한 WTO 설립협정 제12조 및 다른 어느 조항에서도 신규 회원의 가입 절차, 가입 절차의 결과 및 가입 신청국과 WTO 간의 “합의된 조건”(terms to be agreed)에 대해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주목된다. 이와 같이 WTO 설립협정 (제12조의) 입안자들이 가입에 관해 통일적으로 적용될 조건을 입안하지 않기로 선택한 이유로서 이러한 조건들을 각 가입 신청국의 약속과 관련하여 사안별로(on a case-by-case basis) 협상에서 상당 부분을 결정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sup>11)</sup> 환언하면, 상세한 규칙을 규정한 WTO 분쟁해결절차 등과 달리 WTO 가입절차(accession process)에 대한 규칙의 흠결은 그 자체로서 가입절차가 상당히 정치적인 절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WTO 신규 가입국의 가입절차에서 타결된 가입의정서 가운데에는 원회원국들이 약속한 권리 및 의무를 넘는 약속이 포함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실제로 그간 타결된 가입의정서에는 그러한 약속이 적지 않다.<sup>12)</sup> 이 점에서 WTO 설립협정 제12조는 기존 회원들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일종의 백지수표(a carte blanche)를 준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sup>13)</sup> 또한 (신청)국가에 특화된 규칙 제정(country-specific rule-making)이 WTO 가입에 있어 표준 관행이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sup>14)</sup>
- 이와 같이 가입에 대한 규정한 WTO 설립협정 제12조에서 가입 절차에 대해 어떠한 절차규칙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WTO 사무국은 회원국들과 협의하여 잘 정리된 표준 가입절차를 발전시켜 왔다.<sup>15)</sup> 특히, 사무국은 WTO 설립협정 제12조상 가입절차에 관한 여러 Technical Notes와 가입협상 절차에 대한 여러 Notes를 통해 가입절차를 확립해 나갔다.<sup>16)</sup> 가입절차는 4단계로 이뤄

11) Peter J. Williams, A Handbook on Accession to the WTO, 2008, p.12.

12) Geraets, 상계서, pp.60-61.

13) Hardeep Basra, Increased Legalization or Politicalization? A Comparison of Accession under the GATT and WTO, Journal of World Trade, Vol.46, No.4, 2012, pp.948.

14) Julia Y. Qin, Mind the Gap: Navigating between the WTO Agreement and Its Accession Protocols, in M. Elsig, B. Hoekman and J. Pauwelyn, Assess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Fit for Purpose?, 2017, p.12; recited in: Geraets, 상계서, p.61.

15) Williams, 상계서, p.13.

16) 가령, WTO,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Note by the Secretariat, WT/ACC/1, 24 March 1995; WTO, Technical Note on the Accession Process, Note by the Secretariat, WT/ACC/10/Rev.4/Add.1, 25 May 2010; WTO,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Procedures for Negotiations under

진다. 첫째 단계에서 가입 신청국이 WTO사무국에 가입신청서와 함께 당해 신청국의 대외무역제도에 대한 보고서(Memorandum on Foreign Trade Regime: MFTR)를 제출하면 가입 작업반이 설치되고, 가입 절차가 개시된다. 둘째 단계로서 가입 협상이 양자간 기초에서 수행된다. 관심 있는 WTO 회원은 누구라도 신규 가입 신청국과의 양자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작업반은 흔히 '가입 패키지'(the accession package)로 알려진 가입협상 결과를 다자간 기초에서 마무리하는데, 동 결과에는 가입의정서와 작업반 보고서 그리고 상품 무역 및 서비스무역에 대한 각각의 양허표가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 상술한 가입 패키지 문서가 WTO 일반이사회 및 각료회의에 제출된다.<sup>17)</sup>

- 다자간 절차를 통해 수행되는 가입 작업반에서는 가입신청국의 무역정책 및 가입 조건이 논의된다. 다자간 협상은 신청국이 제출한 대외무역제도 보고서(MFTR)를 바탕으로 진행되는데 가입 작업반 참가국들이 질의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면 가입 신청국이 답변하고,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입신청국은 다자협상과 동시에 가입 작업반 참가국 중 개별 협상을 원하는 기존 회원국과의 양자협상을 진행한다.<sup>18)</sup>
- 이와 같이 WTO 가입 절차는 관심을 표명한 기존 모든 WTO 회원과의 개별 양자 협상과 가입 작업반에서의 다자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고, 가입 조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흠결되어 있는 관계로 신청 당사국의 경제체제 등 제반 여건, 가입 협상 과정에서의 협상력 나아가 대내외 정치외교 환경이 가입 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WTO 설립 이후 가입 실제로 협상을 마무리하기까지는 통상 10여년이 소요되었다.<sup>19)</sup>

Article XII, Note by the Secretariat, WT/ACC/22/Rev.1, 5 April 2016 등이 그러하다.

17) Petra Beslac & Chiedu Osakwe, The Evolution of the GATT/WTO Accession Protocol: Legal Tightening and Domestic Ratification, in: Uri Dadush & Chiedu Osakwe(eds), WTO Accession and Trade Multilateralism: Case Studies and Lessons from the WTO at Twenty, 2015, p.356.

18) 최장호·최유정,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경험과 북한 경제, 연구자료 18-02, KIEP, 2018, 37-38쪽.

19) 최장호 등, 상계서, 39쪽.

〈표 2〉 WTO 가입 절차 단계

WTO 가입 신청 + 대외 무역 제도 보고서 (MFTR*) 제출 ↓ 가입 작업반 설치	가입작업반에서의 다자간 절차				가입 작업반의 가입 패키지안 (가입 의정서안 /작업반 보고서안 /상품 · 서비스 양허표안) 채택	WTO 각료회의 /일반 이사회 가입 결정 (가입 의정서 및 (양허표 포함) + WTO 회원국의 가입 의정서 동의 (2/3 이상)	가입 신청 정부의 가입 의정서 수락 ↓ 수락 통보	가입 의정서 발효 ↓ 회원 자격 발생
	대외 무역 제도 보고서 심사	제기된쟁 점별 사실 요약	작업반 보고서안 (DWPR) **요소들 논의	작업반 보고서안 작성				
	복수국간 절차							
	농업	기타 필요한 분야 (예: SPS)	양허표의 기술적 검증/ 소그룹 협의	합의된 요소는 적용 대상 작업반보 고서 및 양허표안 에 반영				
	양자간 절차							
	1차 상품 양허안	상품양허 협상		상품 양허안 작성				
	1차 서비스 양허안	서비스양허 협상		서비스 양허안 작성				

출처: WTO, Accession Process를 기초로 필자가 수정, 보완

\* Memorandum on Foreign Trade Regime

\*\* Draft Report of the Working Party

## 2. WTO 가입문서의 법적 지위

- 가입의정서와 작업반 보고서 그리고 상품무역 및 서비스무역에 대한 각각의 양허표로 구성된 WTO 가입문서 가운데에 특히 가입작업반 보고서 및 가입의정서에는 수출세의 철폐 등 다양한 추가 약속(additional commitments)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추가 약속에는 기존 WTO 회원이 WTO협정상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초과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고, 실제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WTO협정에는 그러한 신규 회원국의 가입의정서 및 가입작업반 보고서에 포함된 약속의

정확한 법적 지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그러한 가입문서와 WTO 협정 간의 관계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WTO 분쟁해결기관이 개별 분쟁 사건별로 쟁점에 대해 내린 판정에 기초에 해결하여 오고 있다.<sup>20)</sup>

- 가령, 중국-원자재 사건에서 WTO 패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WTO 가입이 다른 WTO 회원들과의 협상을 통해 이뤄진다. WTO 설립협정 제12조에 따르면 가입은 가입 회원국과 WTO 간의 합의된 조건에 따라 발생한다. --- 각 회원국의 가입 조건은 그 가입의정서와 작업반보고서에 규정되어 있다. WTO와 가입 회원국 간의 협상된 문서는 권리와 의무간의 미묘한 균형을 통해 달성된 것이며 이는 가입문서에 규정된 각각의 약속의 구체적인 문구에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가입회원국과 WTO는 가입 패키지의 집중적으로 협상된 내용은 WTO체제에의 ‘가입 비용’(entry fee)임을 인정한다.”<sup>21)</sup>

### 3. WTO에서의 가입 신청국의 개도국/최빈 개도국 지위

- 다른 국제기구와 달리 WTO 회원에는 (선진국) 회원[(developed country members)]<sup>22)</sup>과 개발도상국 회원(developing country members) 및 최빈개발도상국 회원(least-developed country members)이라는 상이한 지위가 존재한다. WTO체제에서는 어느 회원이 그러한 지위 중 어떠한 지위를 가지느냐에 따라 부담하는 권리 및 의무가 달라질 수 있기에 신규 회원의 가입과 관련하여 개도국 및 최빈 개도국 지위 인정 여부 이슈가 중요하다.

#### (1) WTO/GATT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의 결정 및 대우

- 먼저 GATT 및 WTO체제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위하여 입안된 특별 대우 규정들이 다수 존재하는 관계로 어느 회원국이 개발도상국에 해당하는

20) Geraets, 상계서, p.62,138.

21) WTO, Panel Reports, China-Raw Materials, para.7.112.

22) WTO TRIPS협정 제67조. 대개는 선진국의 표현 없이 회원으로 칭하면 이는 일반 회원으로서 선진국 회원을 가리킨다.

능가의 결정은 GATT 및 WTO협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7년 GATT나 1994년 WTO협정 어디에서도 이에 관하여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sup>23)</sup> 이 문제는 GATT의 관행에 맡겨지게 되었던 바 이와 관련하여 1964년 제1차 UNCTAD 회의에서 형성된 개발도상국들의 비공식그룹인 소위 '77그룹'(Group of 77)<sup>24)</sup>에의 회원가입 방식이 준용되어 오고 있다. 이는 자기선택(self-selection)에 기초하는 방식이다. 신규 회원이 77그룹의 지위 즉, 개도국의 지위를 주장하면 의장이 당해 회원을 동 그룹에 참가하도록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sup>25)</sup> 한편 GATT에서의 개도국 지위의 취득 역시 이와 같은 계약당사자들의 묵시적인 수락에 기초한 신규 회원의 자기선택에 의해 이루어져 오고 있다.<sup>26)</sup> 이에 따라 GATT에 있어 개도국지위의 결정은 어떠한 법적 기준이나 절차와 관계없이 당해 계약국 자신에게 일임되는 자기선택의 관행이 적용되었다. 한편 현행 WTO협정 및 그 부속문서에서도 개도국 지위의 취득 문제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는 관계로 상술한 GATT에 있어 자기선택의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sup>27)</sup>

- 한편 WTO (설립)협정 및 제반 부속서의 대부분에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규정(special provisions)이 포함되어 있다. 가령, 농업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의 경우 개도국에 대한 “차등적이고도 보다 유리한 대우”가 협상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인식에 따라 약속(commitments)과 관련한 특별 및 차등대우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를 동 협정과 양허 및 약속표에 따라 부여한다고 그 기본입장을 밝히고,<sup>28)</sup> 시장접근에 관한 동 협정 제4조 제2항과 관련하여 동 협정 부속서 5의 B절에서는 개도국의 경우를 분리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sup>29)</sup> 또 다른 예로서 관세평가협정(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23) 다만 이와 관련하여 GATT 제18조 제4항 및 이에 관한 주석및보충규정(Note and Supplementary Provision)(해석지침(Interpretative Note))에서 동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개도국의 형태에 대한 단편적인 규정이 있기는 하나 개도국지위의 객관적인 결정기준을 제시한 것은 아니어서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24) 그 후 77그룹은 그 회원이 증가하여 1984년말 그 회원수가 127개국에 달하였지만 그대로 77그룹으로 불리워진다.

25) Edmond McGovern,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 Globefield Press, 1995, p.9.21-1.

26) Oliver Long, *Law and its Limitations in the GATT Multilateral Trade System*, 1985, p.94.

27) McGovern, *상계서*, p.9.21-1.

28) WTO 농업협정 제15조 제1항.

Article VII of the GATT) 제20조에서는 1979년 관세평가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개도국회원국에 대해 5년간 본 협정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2) WTO에서의 최빈개도국 지위의 결정 및 대우

- 1964년 제1차 UNCTAD 회의 결과 채택된 최종의정서(Final Act)에서 그 중요성이 언급된 이후 개발도상국들중 “최빈개도국”(least developed countries: LDC) 집단의 존재가 국제적으로 공식화되었는데, UN은 매우 낮은 1인당 GNP와 매우 높은 문맹률 및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의 낮은 비중 등 3가지 기준을 기초로 주기적으로 ‘최빈개도국 명부’(LDC list)를 작성하여 오고 있다.<sup>30)</sup> 2018년 기준 47개국 이 UN으로부터 최빈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 이와 관련 1947년 GATT에서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직접 규정한 조항은 없고 다만 1979년 11월 28일 도쿄라운드의 결과 채택된 4건의 “골격”협정 (“framework” agreements)에서 최빈개도국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이다.<sup>31)</sup> 반면에 WTO 설립협정 및 제반 부속문서에서는 개발도상국 이외에 최빈개도국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바 WTO협정 및 부속문서의 적용상 최빈개도국의 판정은 UN에 의해 승인된 상술한 최빈개도국 명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sup>32)</sup>
- 한편, WTO협정 前文에서는 UN에 의해 인정된 최빈개도국들에 대해서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강조한다.<sup>33)</sup> 또한 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29) 즉, 전통적 식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主食인 농산물에 대해서는 그 이행기간의 첫해에는 기준년도 국내소비량의 1%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시장을 개방하도록 규정하고 10년차에는 이를 4%로 증가시키도록 하였으며 그 최소시장접근기회의 이행기간 역시 10년으로 늘려 규정한다. WTO 농업협정 부속서 5 B절. 이는 선진국인 일본의 쌀에 대해서는 이행기간이 6년이고 그 이행기간 첫해에 기준년도 국내소비량의 4%를 그 후에는 매년 0.8%씩 이를 늘려가도록 하고 있는 규정과 비교할 때 그러하다. WTO 농업협정 부속서 5 A절.

30) A. A. Fatouros, Developing States, in: R. Bernhardt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ment 9, 1986, p.73; Edmund J. Osmanczyk, The Encyclopedia of The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aylor and Francis, 1990, p.516.

31) 예컨대 “개발도상국에 대한 차등적이고 보다 유리한 대우와 호혜주의 및 보다 완전한 참여에 관한 결정”(Decision on Differential and More Favourable Treatment and Reciprocity and Fuller Participation of Developing Countries) 제2항 (d)가 그러하다.

32) WTO 설립협정 제11조 제2항 참조.

33) WTO 설립협정 제11조 제2항.

제65조에서는 동 협정의 적용을 WTO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6년 이후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도국 회원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을 제외한 동 협정의 규정에 대하여 이를 추가로 4년간 환언하면 2000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sup>34)</sup> 있음에 비해 최빈개도국 회원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의 적용을 10년 동안 WTO협정 발효일로부터 10년간 환언하면 2006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는 보다 특별한 대우를 규정<sup>35)</sup>한 것 등이 그러하다.

### (3) WTO 가입 협상에서의 개도국/최빈개도국 지위 인정 사례

- 먼저 WTO에서의 개도국 지위 인정에 대해서는 자기선택 관행이 유지되어 오고 있지만, WTO 가입작업반에서의 협상 과정에서 기존 회원국으로부터의 견제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가입 결정이 지연되거나 협상 타결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은 2001년 12월 11일 WTO 가입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지만, 가입 협상 과정에서 일부 회원국들은 중국 경제의 상당한 규모, 급속한 경제성장률 및 과도적 특성을 이유로 들어 중국에게 WTO 협정상 개도국 회원에게 적용되는 유예기간 및 다른 특별(대우)규정의 적용 필요성을 결정함에 있어 실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sup>36)</sup> 실제로 중국의 WTO 가입에는 15년이 걸렸다.<sup>37)</sup>
- 이에 비해 WTO 가입시 최빈 개도국 지위 인정 여부는 가입 신청국의 신청 당시 UN이 지정하는 최빈개도국 명부에의 포함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관계로 달리 기존 회원국이 달리 결정할 재량의 여지가 없다. 가령, 네팔(2004년), 캄보디아(2004년), 라오PDR(2013년), 카자흐스탄(2016년) 등은 모두 WTO 가입 신청 당시 UN이 지정하는 최빈 개도국 명부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최빈 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34) WTO TRIPs협정 제65조 제2항.

35) 동 협정 제66조 제1항.

36)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중국 WTO가입의정서), WT/L/432, 23 November 2001, para.9.

37) 중국은 1986년 GATT에 회원국 자격 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천안문 사태 등으로 복귀가 무산된 바 있고, 이후 1995년 WTO 가입을 재신청하여 2001년 가입이 승인되었다.

#### (4) 북한의 경우

- 먼저 2018년 현재 북한은 UN이 작성하는 최빈개도국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WTO에서 최빈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북한의 개도국 지위 인정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평가하는 북한의 연도별 1인당 국민소득(GNI) 추정 결과에 따르면 가장 최신 정보인 2014년 기준 139만원(US \$ 1,100원 환율 적용: 1,263불)<sup>38)</sup>으로서 WTO에서의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데 달리 어려움은 없으리라 예상된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 WTO 가입 협상시 추가 적 약속을 요구받게 될 이슈에의 대응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38)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경제>경제성장,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EC205>.



### III. 북한의 WTO가입 협상에서 제기될 주요 이슈별 법적 분석

#### 1. 가입 협상 의제 개관 및 분석 대상 의제 선정 기준

- 먼저 WTO 신규 가입국의 가입 협상시 가입작업반에서 논의될 이슈를 베트남의 가입작업반 보고서<sup>39)</sup>를 토대로 개관해 보면 아래의 <표 3>과 같다.

<표 3> WTO 가입작업반에서의 논의 주제 및 그 세부 의제 개관  
(베트남 WTO 가입작업반 보고서 기초)

논의 주제	논의별 세부 의제	
경제정책	통화 및 재정정책; 외환 및 지불 : 투자제도; 국가소유 및 지배 기업; 민영화; 가격책정 정책; 경쟁정책	
정책 입안 및 집행 구조	-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무역권	-
	수입규제	관세 : 기타 부과금; 관세율 쿼타; 수량제한; 관세평가; 원산지규칙 : 선적전 검사 등
	수출규제	수출에 대한 관세, 수수료 및 부과금 : 수출제한
	해외 상품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책	보조금 등 산업정책; 무역기술장벽 : 위생검역조치 : 무역관련 투자조치 : 자유지역; 정부조달 : 농업정책 : 어업 등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보호 : 지적재산권 보호의 실체적 기준 : 지적재산권 남용의 통제 조치; 집행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	
투명성	무역정보의 공표 : 통고	
무역협정	-	

39)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Viet Nam(이하 베트남 가입작업반 보고서), WT/ACC/VNM/48, 27 October 2006, pp.i-iii.

- 다음으로 향후 북한의 WTO 가입 협상시 가입작업반의 논의에서 제기될 수 있는 세부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첫째, 비시장경제 지위와 관련있는 의제에 대한 약속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북한이 비시장경제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개도국 회원에 대한 유예기간 및 특별하고 구별된 대우와 관련된 약속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적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경우 WTO 개도국 지위가 기정 사실이기 때문이다. 셋째, 가입작업반 내지 가입의정서에서의 약속이 상응하는 WTO 관련 협정 안에 직접 연관된 규정이 없는 것과 관련된 것인지를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 이유는 이러한 약속은 기존 WTO 회원국들에게는 금지되지 않는 것을 신규 가입하는 회원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종의 WTO 플러스 약속-또는 보다 엄격한 약속-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분석 대상 의제와 관련 북한에서의 관련 법규 및 제도에 관한 최소한 정보가 있는지의 여부를 적용하였다. 이는 북한의 관련 정보가 없는 경우 향후 북한의 WTO 가입 협상시 당해 의제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상술한 기준을 적용하여 아래에서는 논의 주제 및 그 세부 의제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 2. 상품무역 관련 법·정책 쟁점

### (1) 반덤핑조사 등과 관련 비시장경제 지위 이슈

#### 가. WTO에서의 비시장경제 지위의 의의 및 사례 분석

##### (가) WTO에서의 비시장경제 지위의 의의

- WTO 설립협정을 포함하여 부속협정에서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ies: NME) 지위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일반적으로 비시장경제는 (시장에 대해) 정부의 상당한 정도의 개입이 그 특징인 경제체제<sup>40)</sup>로서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를 가리키거나<sup>41)</sup> 중앙계획경제(centrally planned

40) Geraets, 상계서, p.209.

41) Raj Bhala, International Trade Law Handbook(2nd ed.), 2001, p.67.

economies)와 유사한 개념을 의미한다.<sup>42)</sup> 이러한 비시장경제에서는 수출이나 수입 결정을 내림에 있어 가격이 유일하거나 주도적 고려 사항이 아닐 수 있고, 그 대표적 형태의 하나가 국영무역이기도 하다. 이 경우 시장왜곡 및 보다 낮은 투명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sup>43)</sup>

- 그런데 GATT나 WTO협정에서 회원(국)들에게 의도적으로 특정 유형의 경제구조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 협정 안에는 시장(market)을 전제로 하는 여러 의무 규정들이 존재한다.<sup>44)</sup> 무엇보다 반덤핑 및 상계조치에 관한 규정이 그러하다. 가령, 덤핑 결정을 내림에 있어 흔히 정상가격(normal value)으로 알려진 “수출국에서의 소비용인 경우 동종 상품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의 비교가 가능한 가격(the comparable price, in the ordinary course of trade,)*” 기준이 그러하다.<sup>45)</sup> 이러한 정상가격의 산정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가리킨다. 또는 수혜자에 대한 혜택을 기준으로 한 보조금액의 산정에 있어 “당해 기업이 실제로 *시장에서(on the market)* 조달할 수 있는 비교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에 관한 규정<sup>46)</sup>도 그러하다.
- 라서 비시장경제 국가는 WTO 가입 협상 과정에서 시장에 기초한 경제(market-based economies)로의 체제 전환(transition)을 요구받게 되며, 그러한 체제전환을 진행 중인 국가를 가리켜 체제전환경제(transition economies) 또는 체제전환국이라 부른다. 이와 같이 비시장경제국은 시장에 기초한 WTO협정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WTO 가입 협상시 시장경제 체제 하의 가입 신청국들에 비해 보다 엄격한 약속(more stringent commitments)이 부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sup>47)</sup> 즉, 비시장경제 지위를 받은 신규 회원국의 경우 그 가입의정서(Protocol of Accession)에서 가격 통제의 폐지, 덤핑의 결정에 있어 통상적인 기준 이외의 다른 기준의 적용 또는 보조금의 산정에 있어 특별한 조정의 사용 등에 대한 약속(commitments)을 할 수 있다.

42) Walter Goode,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5th ed.), WTO, 2007, p.308.

43) Goode, 상계서, p.401.

44) Geraets, 상계서, p.248.

45) GATT 1947 제6조1항(a); WTO 반덤핑협정 제2.1조.

46) WTO 보조금협정 제14조 나항.

47) Geraets, 상계서, p.247.

더욱이 중국의 경우 “잠정적인 제품-특정 세이프가드 메카니즘”(Transitional Product-Specific Safeguard Mechanism: TPSSM)<sup>48)</sup>으로 알려진 특별 세이프가드를 12년이라는 한시적 기간이기는 하지만 약속하였다. 이러한 대(對)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는 비시장경제 지위의 중국 수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한 기존 WTO 회원국의 국내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하여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에 비해 완화된 발동 요건과 조치의 적용에 있어 조치 발동국에게 보다 큰 재량을 허용한다.<sup>49)</sup> 요컨대, 비시장경제 지위를 부여받은 신규 회원국들의 경우 자신의 WTO 가입의정서를 통해 WTO 관련 협정에 따르면 기존의 다른 WTO 회원(국)들에게 달리 허용되지 않았을 덤핑결정에 있어 가격비교방법이나 특별 세이프가드조치 등의 이용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비시장경제를 가진 국가가 WTO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개혁에 착수하기 마련이다.

#### (나) WTO 가입의정서에서의 비시장경제 규정 사례: 반덤핑 관련

- WTO 출범 이후 신규 가입한 36개 회원(국)들 가운데 비시장경제 지위를 부여받은 것으로 분류할 수 있는 회원으로서 Georgia(2000년), 중국(2001년), 아르메니아(2003년), 캄보디아(2004년), 베트남(2007년), 타지키스탄(2013년) 및 카자흐스탄(2015년) 등이 있다.<sup>50)</sup> 이들의 WTO 가입의정서에서 비시장경제(NME)를 명시한 대표적인 사례가 반덤핑에 관한 약속이다. WTO 반덤핑협정에서 비시장경제에 관한 명시적 조항은 없다. 그렇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동 협정 제2.2조에서의 덤핑 결정을 내림에 있어 흔히 정상가격(normal value)으로 알려진 “수출국에서의 소비용인 경우 동종 상품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의 비교가 가능한 가격” 기준에 관한 규정 또는 동 협정 제6.10조에서의 (반덤핑조사) 당국은

48)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고준성 외,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해제 시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정부용역보고서, 2006을 참조.

49) 가령,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따르면 발동 요건으로서 “심각한”(serious) 피해가 요구됨에 비해 대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의 경우 이보다 완화된 “실질적인”(material) 피해를 요구한다.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상계 자료, pp.9-10. 또한 대 중국 특별 세이프가드로 인해 현저한 무역전환 발생 제3국에게도 대응조치를 허용한다. 중국 WTO 가입의정서, p.10.

50) Geraets, 상계서, pp.247-248.

일반적으로 조사대상 상품의 알려진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 *각각에 대해 개별적인 덤핑마진(individual margins of dumping for each known exporter or producer)*을 결정한다는 규정 등은 시장을 전제로 하거나 복수의 가격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는 당해 국가가 시장경제 체제임을 가리킨다.

- 이 점에서 비록 WTO 반덤핑협정 안에 시장경제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의 대우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기존 WTO 회원들은 비시장경제국들과의 가입 협상에서 상술한 시장에 기초한 조항들의 적용 이슈를 협상의 일부로서 다루었다. 그 결과로서 중국, 베트남 및 타지키스탄의 가입의정서에는 반덤핑조사와 관련한 이들 국가의 약속이 포함되었고, 동 약속을 “비시장경제 규정”(non-market economy provisions)으로 언급한다. 가령, 중국 가입의정서 15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15. 보조금 및 덤핑 결정에 있어 가격 비교(Price Comparability in Determining Subsidies and Dumping)
  - (a) 1994년 GATT 제6조 및 WTO 반덤핑협정에 따른 가격 비교를 결정함에 있어 ---:
    - (i), ---;
    - (ii) 조사 대상 생산자가 제품의 제조, 생산 및 판매에 있어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내에 시장경제조건(market economy conditions)이 확립되어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수입 WTO 회원(국)은 중국에서의 국내가격이나 비용과의 엄격한 비교에 기초하지 아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 (d) 수입회원국의 국내법에 가입일 기준 시장경제 기준(criteria)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중국이 당해 수입국의 국내법에 따라 자신이 시장경제임을 입증한다면 상기 (a)호는 종료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기) (a)(ii)호의 규정은 가입일 기준 15년 후 종료한다. 덧붙여, 중국이 수입 WTO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시장경제 조건(conditions)이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 확립되었음을 입증하면, (a)호의

비시장경제 규정은 당해 산업이나 분야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sup>51)</sup>

- 이와 관련 베트남 및 타지키스탄의 가입 작업반 보고서(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에서도 중국의 상술한 가입의정서 15항과 유사한 약속이 규정되어 있다. 가령, 베트남 가입 작업반 보고서 255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255. 베트남 대표는 다음을 --- 확인한다.

(a) 1994년 GATT 제6조 및 WTO 반덤핑협정에 따른 가격 비교를 결정함에 있어 ---:

(i), ---;

(ii) 조사 대상 생산자가 제품의 제조, 생산 및 판매에 있어 동종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내에 시장경제조건(market economy conditions)이 확립되어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수입 WTO 회원(국)은 중국에서의 국내가격이나 비용과의 엄격한 비교에 기초하지 아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

(d) 수입회원국의 국내법에 가입일 기준 시장경제 기준(criteria)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베트남이 당해 수입국의 국내법에 따라 자신이 시장경제임을 입증한다면 상기 (a)호는 종료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상기) (a)(ii)호의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 종료한다. 덧붙여, 베트남이 수입 WTO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시장경제 조건(conditions)이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 확립되었음을 입증하면, (a)호의 비시장경제 규정은 당해 산업이나 분야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sup>52)</sup>

- 한편, 비시장경제 규정의 종료와 관련하여 중국 가입의정서에서는 가입일 기준 15년 후로만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베트남 가입 작업반 보고서에서는 2018년 12월 31일 종료한다고 정확한 종료 일자를 명기하고 있음이 차이가 있다.<sup>53)</sup>

51) 중국 WTO 가입의정서 15항.

52) 베트남 가입작업반 보고서, 상계자료, para.255.

53) 참고로 타지키스탄의 가입 작업반 보고서에서도 중국 가입의정서에서와 같이 가입일 기준 15년 후 종료한다고 규정한다.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WT/ACC/TJK/30, 6 November 2012, para.164.

그러나 두 국가의 상기 약속 모두 그 종료일 이전까지 당해 국가가 시장경제가 확립되었음을 수입국의 국내법에 따라 입증하도록 하는 상당히 자기 판단적 성격(largely self-judging nature)을 갖고 있어 WTO 회원국들이 당해 국가가 시장경제가 되었는지를 판단할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이는 다른 협상 이슈에 있어 체제전환 가입국에 비해 기존 회원(국)들의 협상력을 증대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sup>54)</sup> 반면에 비시장경제 지위의 종료를 둘러싼 분쟁의 소지를 남겼다. 실제 중국에 대한 비시장경제 지위 종료를 둘러싸고 중국은 가입의정서 규정에 따라 15년이 지난 현재 자동으로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자국 국내법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립 중에 있다.

## 나. 북한의 경우

- WTO협정 하에서 비시장경제 지위가 이슈가 되는 것은 덤핑 마진 결정이나 정부 지원에 따른 혜택 발생의 여부가 시장에 기초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북한의 유통체계와 가격제정체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 이는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이하 7.1 조치)를 전후로 크게 변화하였다. 7.1 조치 이전 시기에는 생산기업에서 인수할 상품이 절대적으로 감소되면서 도매유통 기능이 대폭 축소되는 등 상업유통체계가 사실상 마비되었다.<sup>55)</sup> 이에 북한은 2002년 7.1 조치를 단행하여 신가격정책을 도입하였는바, 동 정책의 핵심 원리로서 수요자 위주에서 생산자 위주의 가격제정방식으로 전환 그리고 가격을 고정시키지 않고 가격제정국이 수시로 조절하는 것 등이다.<sup>56)</sup> 이러한 7.1 조치를 통해 상업유통체계의 제도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특히, 2003년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농민 시장을 종합시장으로 개편하면서 종합시장을 상품 유통의 일환으로 인정하였다. 이로부터 시장상업 유통이 국영상업 유통을 대체하였다. 대도시에는 대규모의 종합시장을 신설하고 시, 군(구역)에는 규모에 따라 시장을 확장하거나 신설하였다. 개인은 물론 국영기업소, 협동단체들도 시장에서 상품을 팔수 있도록 이용

54) Geraets, 상계서, p.253.

55)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경제: 상품유통실태,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EC217>.

56) 이정철, 북한 가격정책의 내용 분석 및 향후 변화 경로 예측, 코리아연구원, 2007, p.21.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 같은 조치로 북한 내 시장영역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시장 확산이 계획경제 영역을 침식하고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유도하는 등 각종 부작용에 직면하게 되자 북한은 2007년을 전후하여 시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sup>57)</sup>

- 한편, 북한에서 가격은 중앙 및 지방 또는 생산기업들에 의해 제정된다. 또한 북한의 가격결정 주체는 생산물의 계획 설정 주체에 따른다. 국가가 설정한 생산 계획에 대한 가격제정은 가격제정국, 지방에서 설정한 계획제품에 대한 가격제정은 지방, 기업자체 생산 제품에 대한 가격제정은 기업이 하도록 하고 있다. 시장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하지만 국가가 일정한 한도가격을 제시한다.<sup>58)</sup>
- 요컨대, 북한에서 시장이 유통 주요 통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그 역할은 아직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의 가격 결정은 아직도 국가가 주된 역할을 하고 시장의 역할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한계를 가진다. 현재 기준으로 북한의 WTO 회원자격을 평가하면 비시장경제 지위가 명백하고,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을 통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기까지는 상당한 개혁 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향후 WTO 가입 협상을 준비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 기능 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 국영무역기업 및 국영기업 이슈

### 가. 국영무역기업 및 국영기업에 대한 약속

- “국영무역기업”(State Trading Enterprises)이라 함은 국제무역을 수행하도록 인가받은 대개 국가 소유의 상업적 실체를 가리킨다.<sup>59)</sup> 일찍이 GATT 1947 제17조에서는 이러한 국영기업에 대해 특별히 무차별대우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sup>60)</sup>과

57)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경제: 상품유통실태,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EC217>.

58) 상동.

59) W. Goode, 상계서, p.401.

60) GATT 제17조 1. (a) 각 계약당사자는 그 소재지 여하를 불문하고 국영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기업에 대하여 배타적이거나 특별한 특권을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부여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이 수입 또는 수출을 수반하는 구매 또는 판매에 있어서 민간무역업자에 의한 수입 또는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조

무역거래에 있어 상업적 고려를 따를 것 그리고 다른 체약국의 기업에 대해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할 것<sup>61)</sup>을 요구하였고, 동 규정은 GATT 1994 제17조에 그대로 수용되었다. 이와 같이 국영무역기업에 대해 부가적인 의무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이들 국영무역기업은 상품의 수입이나 수출에 대한 독점 내지 상당한 독점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sup>62)</sup>

- 이러한 배경에서 WTO 가입작업반 보고서에도 신규 가입 신청국의 국영무역기업(State Trading Enterprises)에 대한 항목을 두고 있다. 다만, 이들 국영무역기업은 특히 비시장경제 체제를 가진 국가들에 있어 그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비시장경제체 국가의 가입 협상 시 국영무역기업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고 이에 대한 약속이 중요하다.
- 또한 서비스무역의 규율을 포함하는 WTO체제에서는 GATS 제5조를 통해 서비스무역 수행 국영무역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요구를 부과하는데 “국영무역기업”이라는 표현 대신에 “독점 공급자”(monopoly supplier) 및 “배타적 서비스공급자”(exclusive service supplier)로 이를 칭하고 이들에 대해 GATT상 국영기업 무역 규정과 상응하는 의무를 부과한다.<sup>63)</sup>
- 한편, Jordan의 가입작업반 보고서의 국영무역기업에 대한 약속에서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SOEs)이 언급되었다. 국영기업(SOEs)은 무역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국영기업까지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국영무역기업보다 넓은 개념이다. 더욱이 국영기업의 비중이 매우 큰 비시장경제 체제의 가입 신청국 입장

치에 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무차별대우의 일반원칙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임을 약속한다.

61) GATT 제17조 1. (b) 이 항 (a)호의 규정은 이러한 기업이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가격, 품질, 이용가능성, 시장거래가능성, 운송 및 그 밖의 구매 또는 판매 조건을 포함한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이러한 구매 또는 판매를 할 것과 다른 체약당사자의 기업에 대하여 관습적인 영업 관행에 따라서 이러한 구매 또는 판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62) W. Goode, 상계서, p.401.

63) GATS 제8조

1.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 영토내의 모든 독점 서비스 공급자가 관련시장에서 독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제II조 및 구제적 약속에 따른 회원국의 의무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회원국의 독점공급자가 자신의 독점권 범위밖에 있으며 또한 동 회원국의 구제적약속의 대상이 된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직접 혹은 제휴기업을 통하여 경쟁을 할 경우, 회원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자기나라의 영토내에서 그러한 약속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에서는 그 적용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이후 신규 가입국의 가입작업반 보고서에서 “국영기업”에 대한 언급이 자주 발견된다.

- 중국의 경우도 그 가입작업반 보고서에서 상품무역과 관련한 국영무역법인(State Trading Entities)에 대한 약속<sup>64)</sup>과는 별도로 경제정책에 대한 약속의 일부로서 “국영 및 국가출자기업”(State-Owned and State-Invested Enterprises) 항목을 두어 이들 국영기업에 대해 국영무역기업에 대한 것과 유사한 약속을 하였다.<sup>65)</sup> 그런데, 중국은 추가로 “중국 정부는 국영 또는 국가출자 기업의 — 상업적 결정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sup>66)</sup>이라고 약속을 한 점이 주목된다. 후자의 약속은 GATT 제17조상 국영무역기업에 대한 규율을 중국 내 모든 국영 및 국가출자 기업들에게 확대 적용할 것을 명백히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약속을 베트남, 라오스 및 예멘, Vanuatu, Cape Verde도 하였다.<sup>67)</sup>
- 더 나아가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에서는 “(WTO) 보조금협정 제1.2조 및 2조의 적용에 있어 국영기업에게 제공된 보조금은, 국영기업이 그러한 보조금의 압도적인 수혜자이거나 국영기업이 그러한 보조금의 불균형할 정도로 많은 금액을 받은 경우, 특정성이 있는(specific) 것으로 간주 된다”고 규정한다.<sup>68)</sup> TPP(Trans-Pacific Partnership)협정과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협정 협상 등에서 국영기업에 대한 규율이 새로운 무역의제로서 부상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비추어 상술한 WTO 가입 협상 문서에서의 국영기업에 대한 약속이 향후 국영기업에 대한 국제무역규범의 진전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sup>69)</sup>
- 다른 한편으로 이들 비시장경제 체제의 신규 가입 협상국들의 경우 국영기업의 민영화(privatization) 계획 및 추진 일정에 대한 질의를 받는다. 이는 이들 국가

64)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이하 ‘중국의 WTO 가입작업반 보고서’), WT/ACC/CHN/49 1 October 2001, pp.41-43.

65) 중국의 WTO 가입작업반 보고서, 상계서, para.46, 1문.

66) 중국의 WTO 가입작업반 보고서, 상계서, para.46, 1문.

67) Geraets, 상계서, pp.222-223.

68)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상계서, para.10.2.

69) Geraets, 상계서, p.223.

의 국영기업이 핵심 분야의 수익성있는 사업의 운영 주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가령, 베트남의 경우 진행 중인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일종의 주식 공개(equitization) 사업에 대한 철저한 정보공개를 약속함과 아울러 WTO 가입 후 회원들에게 주식 공개 사업의 현황과 국영기업이 지배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주식이 공개된 기업의 개혁 현황에 대해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였다.<sup>70)</sup>

## 나. 북한의 경우

- 북한의 국영기업에 대한 현행 소유구조 및 관리체계는 2002년 발표된 '7·1경제 관리개선조치'에 따른 기업소 운영방안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 동 조치는 기업소 운영에서 당의 영향력 축소와 지배인의 역할 강화 등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표방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당 조직과 기업경영 조직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대안의 사업체계'를 기반으로 북한 당국은 기업소에 대해 당과 행정조직을 통해 엄격히 통제·관리하고 있다.<sup>71)</sup>
- 따라서 향후 북한의 WTO 가입 협상시 먼저 북한 역시 GATT 1994 제17조상의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원칙 및 의무의 준수를 확인하는 약속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덧붙여 북한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되는데,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한 개혁 과제는 단순히 WTO 가입 협상 대응을 위한 과제로서 그쳐서는 아니 되고, 북한 경제 및 산업의 고도화 내지 선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이슈라고 보여진다.
- 이와 관련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Lao PDR)은 1997년 7월 WTO 가입을 신청하여 2004년 9월 회원이 되었지만, Lao PDR은 가입 신청 이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여 1990년 800개에 달하였던 국영기업 수가 가입 결정 이전인 2002년에 37개로 대폭 축소하였다. 민영화에서 Lao PDR은 국가가

70) 베트남의 WTO 가입작업반 보고서, p.25.

71) 박석희, 조강주, 장익현, 전인석,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 국영기업의 개혁 전략,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8권 제4호, 2018.2, p.201.

최초 51%의 다수 지분을 유지하되 후속적으로 그 지분을 감축하는 합작기업 모델 방식을 많이 활용하였는바<sup>72)</sup> 참조할만하다.

### (3) 무역권 이슈

#### 가. 무역권의 의의 및 신규 가입국의 약속 현황

- 먼저 무역권(trading rights)이라 함은 특히 중앙계획경제에서 또는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 중인 그러한 경제에서 수출과 수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선택된 기업들에게 부여된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들 기업들이 무역권을 향유하기 위해 반드시 국가 소유 기업 즉, 국영기업이어야 필요는 없다.<sup>73)</sup> 즉, 가입 협상 시 무역권 이슈는 비시장경제 체제를 가진 신청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이는 국영기업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 이와 같이 무역권에 관한 약속은 수출 및 수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되는 기업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국내법과 관련된 사안이다. 29개 신규 가입국이 이에 관한 약속을 하였는데 그 핵심은 비차별적인 기초에서 상품을 교역할 권리를 확인하는 것이다. 일부 약속에서는 어떤 기업도 수출자 또는 수입자로서 등록하는 것이 허가되어야 한다(shall be permitted)는 것을 명시하기도 한다. 나아가 일부 약속은 무역권과 관련하여 가입 회원국에서의 물리적 주재나 투자 요건의 부과 금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약속들은 당해 신규 가입국에서의 다른 WTO 회원국의 인·적, 외국인-을 이들의 영업 및 무역 기회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점에서 단지 수입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GATT 제3조 및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상 의무의 범위를 넘는 것 즉, WTO 플러스 의무라는 평가가 있다.<sup>74)</sup>

72)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LAO PDR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ACC/LAO/45, 1 October 2012, p.8.

73) W. Goode, 상계서, 443쪽.

74) Julia Ya Qin, WTO-Plus Obligatio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Legal System: An Appraisal of the China Accession Protocol, Journal of World Trade, Vol.27, No.3, 2003, p.501; recited in: Geraets, 상계서, pp.290-291.

## 나. 북한의 경우

- 북한에서는 2013년 들어 몇몇 독립채산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국가가 지닌 생산권, 분배권, 무역권, 합병 및 합작권 등의 권한을 이양하고 기업 단위로 독자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일부 인정한 조치가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무역권을 부여받은 일부 기업들의 경우 기업 자체로 수출품 생산 기지를 구축하여 생산품을 해외 시장에 판매하여 독자적으로 외화를 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sup>75)</sup> 이와 같이 북한의 경우 무역권을 일부 기업에게만 부여하는 일종의 특권적 권리로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WTO 가입 협상시 북한은 무역권 제도의 전면적인 변혁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4) 수출세 이슈

#### 가. 수출세의 규율 및 가입 회원국의 수출세에 관한 약속의 유형별 현황

- 원칙적으로 WTO협정에서는 회원국들의 수출세(export duties)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다른 당사자의 영토로 향하는 상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해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과징금 이외의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도 설정하거나 유지해서는 아니 된다는 GATT 1994 제11조 1항에서 확인된다. 다만, 그러한 수출세를 적용하는 경우 회원국은 가령, GATT 1994 제1조 1항상 수출에 대한 관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 부과에 있어 최혜국대우 의무 및 동 제24조 8항상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에 있어 관세 및 그 밖의 제한적인 상거래의 철폐 의무 등의 요건과 합치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와 같이 수출세 자체가 WTO 협정상 금지되는 것이 아닌 관계로 가입 협상에서 수출세를 도입하

75) KOTRA 오사카무역관, 변화하는 북한의 경제 정책과 주요 분야 동향, 2014.6.25.; Kotra 해외시장뉴스, 북한정보,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10/globalBbsDataView.do?setIdx=247&dataIdx=133029&pageViewType=&column=title&search=변화하는%20북한의%20경제%20정책과%20주요%20분야%20동향&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지 않기로 하는 약속은 WTO협정상 포함된 기본 의무를 초과하는 일종의 WTO 플러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그간 15개 신규 가입 회원국들이 행한 자신들의 규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수출세에 관한 약속의 수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를 수출세의 부과 약속에 있어 GATT 1994 제20조상의 일반적 예외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제한 정도를 기준으로 그 유형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유형은 “수출세를 오직 WTO협정 규정에 따라 적용하겠다”(would apply export duties onl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WTO Agreement)<sup>76)</sup>고 한 크로아티아의 약속이 그러하다. 이는 크로아티아가 자신의 수출세를 부과할 WTO협정상 자유를 유지할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기존의 다른 회원들이 수출세 부과에 있어 갖는 의무-가령, GATT 제1조1항상 MFN 적용- 이외에는 달리 가입 약속을 통해 추가적인 약속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실상 ‘수출세에 관한 약속 없음’(no commitment)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는 이에 관한 가장 덜 엄격한 약속에 해당한다.<sup>77)</sup>
- 두 번째 유형은 “WTO협정 규정에 따라 수출세의 적용을 최소화하겠다”(would minimize)<sup>78)</sup>고 한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및 Georgia의 약속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불가리아 등의 최소 이용 약속은 모호하고 판단의 주체가 자신들이어서 일종의 연성법(soft law) 성격의 약속이라 할 수 있고, 사실상 자신들의 수출세를 부과할 WTO협정상 규제적 자유를 제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환언하면, 이는 기존의 다른 회원들이 수출세 부과에 있어 갖는 의무-가령, GATT 제1조1항상 MFN 적용- 이외에는 달리 가입 약속을 통해 추가의 제한을 약속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는 ‘수출세에 관한 연성적 약속’(soft commitment)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79)</sup>

76)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ROATIA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ACC/HRV/59, 29 June 2000, para.101.

77) Geraets, 상계서, pp.283-284.

78)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ROATIA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ACC/HRV/59, 29 June 2000, para.101.

79) Geraets, 상계서, p.284.

- 세 번째 유형은 특정 제품(들)에 대한 수출세 부과를 금지한다는 일종의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ing) 유형의 약속이 있는데, 이는 앞의 2개 유형에 비해 가입국의 수출세의 사용을 그 만큼 제한하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약속이라 할 수 있다. 가령, 몽고는 비가공 cashmere, 사우디아라비아는 철과 강철 스크랩(steel scrap), 베트남은 철 및 비철 스크랩 금속을 대상으로 약속하였다. 라트비아와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가입의정서의 표 안에 그리고 러시아는 자국의 약속 양허표 안에 각기 열기한 일련의 품목들에 대해 수출세를 인상하지 않거나 철폐하기로 동의하였다.<sup>80)</sup>
- 네 번째 유형은 달리 적용 예외를 명시한 상품을 제외한 그 밖의 상품에 대한 수출세를 적용 또는 재도입하지 않기로 동의한 중국, 몬테네그로, 타지키스탄 및 아프가니스탄이 행한 약속으로서 이는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ing) 유형이라 할 수 있고, 가입국의 수출세 사용에 관해 가장 엄격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몬테네그로는 모든 상품에 대해 수출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약속하였음이 주목된다. 나아가 이러한 네거티브 리스트 유형에 속한 약속에서는 모두 GATT 제20조에 명시된 일반적 예외의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점 역시 매우 주목된다.<sup>81)</sup> 가령, 중국은 자국의 (가입)의정서 부속서 6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GATT 1994 제8조(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 규정과 합치되게 적용되지 않는 한 수출에 대해 시행되는 일체의 조세 및 부과금을 철폐한다고 약속한 것이 그러하다.<sup>82)</sup> 중국의 약속에는 부속서 6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품에 부과되는 수출세는 “WTO협정이나 GATT 1994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는 다른 가입국들의 약속에 포함되는 통상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한 명시적 문구의 결여는 그 후 중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피소된 중국-원자재(China-Raw Materials) 사건<sup>83)</sup> 및 중국-희토류(China-Rare Earths)<sup>84)</sup> 사건에서 분쟁해결기관으로 하여금 중국은 GATT 1994 제20조에 포함된 일반적 예외를 원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리게 된 근거가 되었다.<sup>85)</sup>

80) 상동.

81)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MONTENEGRO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ACC/CGR/38 WT/MIN(11)/7, 5 December 2011, para.132.

82)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 상계 문서, 11.3.

83) WT/DS/394/R; WT/DS/394/AB(2012) etc.

84) WT/DS/431/R; WT/DS/431/AB(2014) etc.

## 나. 북한의 경우

- 북한에서의 관세의 본질은 사회주의국가로서 무역의 국가 독점을 유지하는 데 있기 때문에 국내산업 보호와는 연관이 적고 관세부과 방식도 서방국가들의 관행과 큰 차이가 있다. 북한에서의 관세의 종류는 품목에 따라 수출세와 수입세가 있으며 최소세율과 최저세율의 복수세율을 채택하여 적용한다.<sup>86)</sup> 또한 무역은 국가의 계획과 독점 하에 이뤄지는 관계로 관세의 필요성이 없고, 따라서 무역상품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비무역품-외국여행자의 소지품, 국제소포 등-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의 관세는 수출입의 통관 업무를 통한 밀수 방지, 상품의 수출입 통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역할이 그 특징이다. 다만, 북한에서도 많은 무역상사가 설립되고 합영기업에게 직접적인 대외무역을 허용함에 따라 이를 통제하기 위해 무역상품에 대한 관세제도의 체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sup>87)</sup>
- 일반적으로 국가 재정의 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수입세와 달리 수출세의 부과는 식품이나 수출 회원국에게 불가결한 그 밖의 상품의 심각한 부족(critical shortage)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것<sup>88)</sup>이 주된 목적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의 2017년 수출 품목별 현황에 따르면 광물성 생산품 수출은 전년 대비 55.7% 감소한 6.46억 달러로서 전체 수출의 36.4%를 차지하였고, 섬유제품이 5.85억 달러(전체 수출의 33.0%), 동물성 제품이 1.65억 달러(전체 수출의 9.3%), 식물성 제품 1.10억 달러(전체 수출의 6.2%)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sup>89)</sup> 이를 보면 북한은 수출 규모가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수출 품목이 1차 산품과 섬유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산업 기반이 매우 열악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수출세 도입이나 운영의 필요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WTO 가입 협상 시 수출세에 관한 약속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슈로서 평가된다.

85) Geraets, 상계서, p.276, 284.

86) 참고로 최고세율은 일반세율로서 최저세율의 2~4배가 보통이며 최저세율은 협정세율로서 호혜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적용한다.

87) NKchosun,

[http://nk.chosun.com/bbs/list.html?table=bbs\\_24&idxno=2993&page=4&total=282&sc\\_area=&sc\\_word=](http://nk.chosun.com/bbs/list.html?table=bbs_24&idxno=2993&page=4&total=282&sc_area=&sc_word=)

88) GATT 1994 제11조2항(a)호 참조.

89) Kotra, 2017 북한 대외무역 동향, 2018, p.4.

## (5) 무역기술장벽 이슈

### 가. 무역기술장벽 이슈의 의의 및 약속 현황

- 먼저 기술규제라 하면 개별 국가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가리키는 데, 이것들이 수입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하나로서 작용하는 경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또는 ‘무역기술장벽’)이 된다. 그런데, 국가 표준이 개별 국가의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수입품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국가 표준들이 서로 상이하다는 자체가 수출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sup>90)</sup> 이와 같이 표준주권에 따른 국가별 표준제도의 차이 및 그 운용에 있어 투명성의 결여는 국제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고, 실제 이러한 무역기술장벽의 존재로 인해 수출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있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별 WTO 회원국이 수립, 운영하는 기술규제가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WTO협정의 하나로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이 채택되었다. 관세장벽이 낮아지면서 비관세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무역기술장벽을 둘러싼 적지 않은 분쟁과 수출자들로부터의 많은 불만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 있다.
- 가입 협상에서 무역기술장벽 이슈에 대한 전형적인 약속은 신청국이 어떠한 과도기간 없이 그 가입일로부터 TBT협정을 적용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다만, 일부 최빈개도국(캄보디아, 라오PDR, 예멘 등) 및 개도국(타지키스탄, Seychelles)의 경우 과도기간을 받은 경우도 있기는 하다. 일부 국가들은 TBT협정에 대한 추가적 약속을 하였다. 가령, 중국 등은 TBT협정에 규정된 투명성 및 통고 요건의 적용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약속을 한 것<sup>91)</sup>이 그러하다.

90) McGovern, 상계서, pp.7.21-3~7.21-4.

91) 중국의 가입작업반 보고서, 상계 자료, pp.35-36.

## 나. 북한의 경우

- 북한은 표준을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개발의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국가 주도 표준화 체계를 수립했다. 북한의 현행 규격법은 1997년에 제정되었지만, 일찍이 1949년에 규격화 사무국을 설치하고 1954년에 국가규격제정위원회가 설립되면서 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sup>92)</sup> 또한 북한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 표준의 국제표준화는 남북경협은 물론 북한의 대외무역의 확대에 도움이 될<sup>93)</sup> 뿐만 아니라 향후 WTO 가입 협상시 무역기술팜 이슈의 대응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서비스무역관련 법·정책 쟁점

### (1) 가입 신청국의 서비스무역 관련 대응 과제 및 약속 현황

-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는 WTO체제하에서 비로소 시작되었고, 회원국들은 WTO협정의 하나인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상의 규범 준수와 회원국이 각기 제출한 구체적 약속양허표에서 약속한 서비스시장 개방 약속의 이행을 통해 이를 실현해 오고 있다.
- 이와 관련 WTO 가입 신청국은 먼저 서비스무역을 규율하는 자국의 법 및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출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WTO 가입 협상에서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약속은 주로 신청국의 서비스시장 개방 약속을 둘러싼 양허협상에 초점을 두어 왔다. 이에 비해 GATS 규범에 관한 약속은 국내규제를 규정한 GATS 제6조에 대해 주로 이뤄졌다.<sup>94)</sup> 이는 GATS에서 각 회원국의 시장개방 약속에서 이용되는 소위 ‘Hybrid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각 회원국이 자신이 개방하고자 하는 서비스분야/업종을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에 기초해 기재하고, 이와 같이 개방을 약속한 분야/업종별로 GATS 규범과 비합치함에도 유지하고자 하는 제한을 기재하는

92) 정병기, 남북의 표준 및 표준화의 차이와 표준 협력 과정 및 표준 통합의 방향과 전망, 한국정치연구 제25집 제1호, 2016, p.8.

93) 정병기, 상계서, p.16.

94) Geraets, 상계서, p.294-295.

방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은 WTO 가입작업반 보고서에서 굳이 GATS 규범에 대한 추가적인 약속을 할 필요를 반감시키기 때문이다.

## (2) 북한의 경우

- 북한의 산업 전체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2년 23.5%와 1994년 27.9%로 30%대에도 미치지 못하다가 1996년 32.3%를 기록하여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고, 이후 2007년 34.1%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0년까지 30%대를 유지하였다. 그러다가 다시 2011년과 2012년 29.4%로 30%대 밑으로 떨어졌고, 이후 다시 30%대를 간신히 회복하여 2016년 31.15%를 기록하였다.<sup>95)</sup>
- 일반적으로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서비스산업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하고 높기 마련이다. 선진국들의 경우 국내총생산에서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70%대를 넘는다. 이에 비해 북한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30%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북한의 서비스산업이 매우 낙후되어 있음을 반증하며, 동시에 서비스시장의 규모 자체가 매우 작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WTO 가입 협상 시 북한에 대한 서비스시장 개방 요구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4. 외국인투자제도·정책 쟁점

### (1) 외국인투자제도와 WTO 가입 논의 관계 및 가입작업반 보고서에서의 약속 현황

- WTO 가입작업반 보고서에는 거의 예외 없이 투자제도(Investment Regime)에 관한 항목이 있다. 여기에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와 관련된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중국,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통가 및 리베리아가 그러하다. 사실 WTO협정에서는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협정과 GATS의 상업적 주재에 의한 서비스공급(모드 3)에서의 규율을 제외하고는

95) 통일부 북한정보 포털, 경제)산업구조 및 생산성,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EC206>

아직 외국인직접투자 자체를 규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입작업반 보고서에서 이에 관한 약속을 하였다는 것은 흥미롭다.<sup>96)</sup>

- 참고로 가입작업반 보고서에서의 FDI에 관한 약속을 보면, 직접세에 대한 내국민대우 부여에 관한 약속으로부터 자국의 투자법 및 그 시행이 WTO협정과 합치하게 하겠다는 약속까지 다양하다.<sup>97)</sup>

## (2) 북한의 경우

- 북한은 외국인자본과 선진 기술을 도입할 목적에서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하였고, 1990년대 들어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전반을 규율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운영에 관한 일반원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기본법의 성격을 가진 외국인투자법을 1992년 제정하였고, 이밖에 그 하위법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업법, 합작법,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외국투자은행법 및 토지임대법 등을 제정하였다. 이들 외국인투자 관련 법령은 이후 1999년 및 2007년 전면 개정되는 등 수차례 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sup>98)</sup> 최근의 외국인투자기업 관련법에 관한 입법조치로서는 2012년 노력의 채용 및 노동계약의 체결, 노동과 휴식, 노동보호,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 등 51개조로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법의 제정과 외국인투자기업 재정관리법 및 외국투자기업 회계법의 개정 등이 있었다.<sup>99)</sup>
- 한편, 북한 당국은 2012년 기준 유럽 및 동남아시아 나라들을 비롯하여 28개 국가들과 쌍무적인 투자장려 및 보호협정을 체결하여 외국투자자들이 투자한 재산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투자법상의 토대도 마련하였고, 15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도 체결하였다.<sup>100)</sup>

96) Geraets, 상계서, pp.289-290.

97) Geraets, 상계서, p.290.

98) 정형곤 · 김지연 · 이종운 · 홍익표,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KIEP 연구보고서 11-21, 2011, 57-59쪽.

99)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경제동향, <http://nkinfo.unikorea.go.kr/nkp/trend/viewTrend.do>; 주간 북한동향 제1085호 2012-01-10, 외국인투자기업 관련법 수정 · 보충.

100) 노컷뉴스, 북한 "투자환경소개" 문건 첫 입수 공개, 2012.9.27., <http://www.nocutnews.co.kr/news/971014>.

- 이와 관련 스테판 헤거드 교수는 북한의 경제개혁의 성패는 외국인 투자의 유치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초래된 군사적 긴장과 국제사 회로부터의 경제제재가 지속된다면 중국을 제외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북한에 투자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김정은 정권이 2013년 채택된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수할 경우 외자유치의 개연성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sup>101)</sup> 이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은 사실상 향후 북한의 WTO 가입 논의의 개시를 위한 일종의 선결요건임을 시사한다.

## 5.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법제 쟁점

### (1) 쟁점 일반

- WTO설립협정 제12조에 따르면 가입하는 회원(국)은 동 협정 부속서 1C: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he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협정)의 적용을 받는다. TRIPS협정에서는 지적재산권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를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을 시행하는 조치 및 절차가 그 자체 정당한 무역에 대한 장벽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를 희망하면서,<sup>102)</sup> WTO 회원(국)들은 지적재산권 보유자의 사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해야만 하는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s)에 대해 지식재산권 유형별로 규정하고,<sup>103)</sup> 또한 회원(국)들이 그러한 지적재산권을 시행하기 위해 자신들의 국내법 하에서 제공해야 하는 보호 장치에 대해 규정한다.<sup>104)</sup> 이에 따라 신규 가입 회원(국)의 다수는 그 가입일 보다 늦지 않게 자신들의 TRIPS협정 상 제반 의무와 자국의 국내 지적재산권법제 간의 합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언하면, TRIPS협정 규정과 상충하는 관련 국내 지적재산권법 조항을 개정하거나 흠결된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1) 자유아시아방송, 김정은 정권 경제개혁 3년 해부 (2) 실패한 기업소 독립채산제, 2015.6.10., <https://www.rfa.org/korean/special-programs/ecoreform-06102015095109.html>

102) WTO TRIPS협정 前文.

103) 가령, 저작권과 관련하여 회원국은 베른협약(1971년) 제1조에서 제21조까지 및 동 부속서를 준수한다고 규정한다.

104) TRIP협정 제3부에서 민사 및 행정절차와 구제, 잠정조치 등에 관한 규정이 그러하다.

- 다만, WTO에 가입하는 일부 최빈개도국(LDCs)의 경우 TRIPS협정의 국내적 이행 의무를 일정한 잠정기간(transitional period) 동안 그 적용을 유예 받았다. 가령, 2012년 WTO에 가입한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은 TRIPS협정을 2016년 12월 31일보다 늦지 않게 전면 이행하기로 약속하여<sup>105)</sup> 4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 이와 같이 신규 가입 회원(국)들의 경우 WTO 가입에 따른 WTO 의무와의 합치성 확보를 위해 자국 지적재산권법의 제·개정과 같은 입법조치의 이행 약속을 준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보다 큰 문제는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 신규 회원들의 경우 다른 회원(국) 지적재산권 보유자의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그리고 권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절차상 이행에 있어 상당한 불만을 제기 받아 오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물론 가입 후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입 협상 시 미국과 같은 지적재산권 선진국들로부터의 강한 요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2) 북한의 경우

- 사적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사회주의 체제를 가진 북한이지만 공업소유권과 관련하여 일찍이 1967년에 발명 및 창고고안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였고 1968년에는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또한 1980년대 경제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외국기술 및 자본 유치에 필요해 짐에 따라 1983년, 1986년, 1991년에 각기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나아가 1998년에는 상표 및 공업도안에 관한 규정을 각기 상표법 및 공업도안법으로 분리하였고<sup>106)</sup>, 1998년 발명법 역시 분리 제정하였다. 이밖에 2004년에 지적재산 유통제도화와 소프트웨어 중재위원회설립 등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 개선을 실시하였다.<sup>107)</sup>

105) WTO,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LAO PDR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ACC/LAO/45, 1 October 2012, para.227.

106) 권규우, '북한 산업재산권제도 현황 및 남북한 산재권 교류협력방안-제도일반을 중심으로', 「지적재산21」, 제64호, 2001년; 육소영, 윤권순, 북한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10쪽에서 재인용.

107) 주간북한동향 제786호 2006-04-26,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즈음 지적 소유권 보호 강조, <http://nkinfo.unikorea.go.kr/nkp/trend/viewTrend.do>.

- 또한 1998년 9월 북한 헌법 개정에서도 여전히 개인소비를 위한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사적소유를 인정하는 전통적 사회주의를 고수하고<sup>108)</sup> 있는 북한이지만,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서는 동 개정 헌법 제74조에서 “국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발명가와 창의고안자에게 배려를 돌린다. 저작권, 발명권, 특허권은 법적으로 보호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가 지적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함을 명시하고 있음이 주목된다.<sup>109)</sup> 이와 같이 1998년 개정 헌법에서 표현된 적극적 지적재산권 보호의지에 따라 북한에서는 2001년 문화적 영역에서의 정신적 창작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을 뒤늦기는 하지만 제정하였다.<sup>110)</sup>
- 한편, 북한의 국제지적재산권 관련 동향을 보면, 일찍이 1974년 8월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IPO)에 가입한 이래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조약의 가입을 추진하여 왔는데,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경우 1980년 6월에,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의 경우 1980년 6월에, 意匠의 국제출원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경우 1997년 6월에 그리고 문학·과학·예술작품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의 경우 2003년 1월에 가입하였다.<sup>111)</sup>
- 이와 같이 북한은 1990년대 후반 들어 과학기술 중시 사상을 내세운 가운데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국제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병행하여 관련 국내법·제도의 정비에도 주력하여 왔음<sup>112)</sup>은 매우 주목된다. 따라서 북한의 지적재산권법제의 상당 부분은 적어도 국제지적재산권협약에서 규정한 국제최저보호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령, 북한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이 발표된 때로부터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년까지 보호되고,<sup>113)</sup>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름으로 창작된 저작물이나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이 발표된 때로부터 50년까지 보호 된다<sup>114)</sup>고 규정한다. 이는 베른협약에 기초하

10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1998) 제24조에서 “개인소유는 국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라고 규정한다.

109) 육소영 등, 상계자료, 11쪽.

110) 2001년 제정한 저작권법을 2002년 개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1) 주간북한동향 제786호.

112) 주간북한동향 제786호.

113) 북한 저작권법 제23조.

114) 북한 저작권법 제24조.

여 규정된 TRIP협정 12조를 충실히 반영한다. 따라서 북한의 WTO 가입 협상에 있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이슈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리적 표시 등과 같이 현행 북한 법제에 도입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의 추가 입법에 관한 약속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 IV.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대응 과제

### 1. 정책적 시사점

- 첫째, 그간 WTO에의 신규 가입에는 평균 10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고, 더욱이 북한은 비시장경제 체제일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폐쇄경제 체제를 유지해 온 관계로 가입 준비에 훨씬 많은 준비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의 WTO 가입을 위한 제반 법적 쟁점 및 이슈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개시될 수 있는 북한의 WTO 가입 협상에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가능한 빨리 북한이 WTO체제에 편입하여 이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북한의 가입 준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둘째, 현행 WTO협정상 신규 회원의 가입 조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흠결되어 있는 관계로 신청 당사국의 경제체제 등 제반 여건, 가입 협상 과정에서의 협상력 나아가 대내외 정치외교 환경이 가입 협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북한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었을 때 신속히 가입 협상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셋째, 2018년 현재 북한은 UN이 작성하는 최빈개도국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WTO에서 최빈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지만,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GNI) 등에 비추어 WTO에서의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는데 달리 어려움은 없으리라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경우 WTO 가입 협상시 추가적 약속을 요구받게 될 이슈에의 대응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 넷째, 북한 전문가 중에는 북한의 경제개혁의 성패가 외국인 투자의 유치에 달려 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초래된 군사적 긴장과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제재가 지속된다면 중국을 제외한 외국인 투자자들은 북한에 투자를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향후 김정은 정권이 2013년 채택된 핵-경제 병진노선을 고수할 경우 외자유치의 개연성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은 사실상 향후 북한의 WTO 가입 논의의 개시를 위한 일종의 선결요건임을 시사한다.

## 2. 향후 대응 과제

- 본 연구에서의 분석을 기초로 향후 북한의 WTO가입 협상에서 제기될 주요 이슈 가운데 특별히 대응 준비가 요망되는 이슈를 요약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북한에서 시장이 유통 주요 통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그 역할이 아직 매우 제한적이며, 북한에서의 가격 결정 역시 아직도 국가가 주된 역할을 하는 관계로 시장의 역할은 상당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현재 기준 북한의 WTO 회원자격을 평가하면 비시장경제 지위가 명백하고,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통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기까지는 상당한 개혁 과정이 요구된다. 이 점에서 향후 WTO 가입 협상을 준비하고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장 기능 회복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둘째, 향후 북한의 WTO 가입 협상시 먼저 북한 역시 GATT 1994 제17조상의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원칙 및 의무의 준수를 확인하는 약속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덧붙여 북한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되는데,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포함한 개혁 과제는 단순히 WTO 가입 협상 대응을 위한 과제로서만 그쳐서는 아니 되고, 북한 경제 및 산업의 고도화 내지 선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이슈라고 보여 진다.
- 셋째, 북한에서는 무역권이 일부 기업에게만 부여하는 일종의 특권적 권리로서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WTO 가입 협상시 북한은 무역권 제도의 전면적인 변혁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넷째, 북한은 수출 규모가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수출 품목이 1차 상품과 섬유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되어 있고, 북한의 산업 기반이 매우 열악함을 반증하는 것으로 수출세 도입이나 운영의 필요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WTO 가입 협상 시 수출세에 관한 약속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슈로서 평가된다.
- 다섯째, 북한은 2000년대 초반부터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데, 북한 표준의 국제표준화는 남북경협은 물론 북한의 대외무역의 확대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향후 WTO 가입 협상시 무역기술장벽 이슈의 대응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여섯째, 북한의 경우 서비스산업의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30%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북한의 서비스산업이 매우 낙후되어 있음을 반증하며, 동시에 서비스시장의 규모 자체도 매우 작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WTO 가입 협상 시 북한에 대한 서비스시장 개방 요구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일곱째, 북한의 WTO 가입 협상에 있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이슈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리적 표시 등과 같이 현행 북한 법제에 도입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의 추가 입법에 관한 약속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보다 가입 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보다 큰 문제는 북한의 다른 회원(국) 지적재산권 보유자의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그리고 권리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절차상 이행을 얼마나 관련 법령에 따라 제대로 집행하는지의 수준에 달려 있다.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고준성 외, 대중국 특별 세이프가드 해제 시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 분석 및 대응방향, 정부용역보고서, 2006.
- 권규우, '북한 산업재산권제도 현황 및 남북한 산재권 교류협력방안-제도일반을 중심으로', 「지적재산21」, 제64호, 2001년.
- 박석희, 조강주, 장익현, 전인석,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 국영기업의 개혁 전략,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8권 제4호, 2018.
- 육소영, 윤권순, 북한의 지식재산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 이정철, 북한 가격정책의 내용 분석 및 향후 변화 경로 예측, 코리아연구원, 2007.
- 정병기, 남북의 표준 및 표준화의 차이와 표준 협력 과정 및 표준 통합의 방향과 전망, 한국정치연구 제25집 제1호, 2016.
- 정형근 · 김지연 · 이종운 · 홍익표, 북한의 투자유치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방향, KIEP 연구보고서 11-21, 2011.
- 최장호 · 최유정,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 경험과 북한 경제, 연구자료 18-02, KIEP, 2018.
- KOTRA 오사카무역관, 변화하는 북한의 경제 정책과 주요 분야 동향, 2014.6.25.
- Kotra, 2017 북한 대외무역 동향, 2018.

〈국외문헌〉

- Hardeep Basra, Increased Legalization or Politicalization? A Comparison of Accession under the GATT and WTO, *Journal of World Trade*, Vol.46, No.4, 2012.
- Petra Beslac & Chiedu Osakwe, The Evolution of the GATT/WTO Accession Protocol: Legal Tightening and Domestic Ratification, in: Uri Dadush & Chiedu Osakwe(eds), *WTO Accession and Trade Multilateralism: Case Studies and Lessons from the WTO at Twenty*, 2015.
- Raj Bhala, *International Trade Law Handbook*(2nd ed.), 2001.
- A. A. Fatouros, Developing States, in: R. Bernhardt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ment 9, 1986.
- Dylan Geraets,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A Legal Analysis*, 2018.
- Walter Goode, *Dictionary of Trade Policy Terms*(5th ed.), WTO, 2007.
- Oliver Long, *Law and its Limitations in the GATT Multilateral Trade System*, 1985.
- Edmond McGovern, *International Trade Regulation*, Globefield Press, 1995.
- Edmund J. Osmanczyk, *The Encyclopedia of The United Nation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Taylor and Francis, 1990.
- Julia Ya Qin, WTO-Plus Obligations and Their Implications for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Legal System: An Appraisal of the China Accession Protocol, *Journal of World Trade*, Vol.27, No.3, 2003.

Julia Y. Qin, Mind the Gap: Navigating between the WTO Agreement and Its Accession Protocols, in M. Elsig, B. Hoekman and J. Pauwelyn, Assess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Fit for Purpose?, 2017.

Peter J. Williams, A Handbook on Accession to the WTO, 2008.

### 〈WTO 문서〉

WTO 설립협정 및 부속문서

WTO,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Note by the Secretariat, WT/ACC/1, 24 March 1995.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ROATIA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ACC/HRV/59, 29 June 2000.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CHINA, WT/ACC/CHN/49 1 October 2001

WTO, ACCE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T/L/432, 23 November 2001.

WTO,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Viet Nam(이하 베트남 가입작업반 보고서), WT/ACC/VNM/48, 27 October 2006.

WTO, Technical Note on the Accession Process, Note by the Secretariat, WT/ACC/10/Rev.4/Add.1, 25 May 2010.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MONTENEGRO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ACC/CGR/38 WT/MIN(11)/7, 5 December 2011.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the Republic of Tajikistan, WT/ACC/TJK/30, 6 November 2012.

REPORT OF THE WORKING PARTY ON THE ACCESSION OF LAO PDR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ACC/LAO/45, 1 October  
2012.

WTO, Access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Procedures for Negotiations  
under Article XII, Note by the Secretariat, WT/ACC/22/Rev.1, 5 April  
2016

WTO, Panel Reports, China-Raw Materials.

WT/DS/394/R; WT/DS/394/AB(2012).

WT/DS/431/R; WT/DS/431/AB(2014),

#### 〈웹사이트 자료〉

노컷뉴스, 북한 "투자환경소개" 문건 첫 입수 공개, 2012.9.27.,  
<http://www.nocutnews.co.kr/news/971014>.

자유아시아방송, 김정은 정권 경제개혁 3년 해부 (2) 실패한 기업소 독립채산제,  
2015.6.10.,  
<https://www.rfa.org/korean/special-programs/ecoreform-06102015095109.html>.

주간북한동향 제786호 2006-04-26,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즈음 지적 소유권 보호  
강조, <http://nkinfo.unikorea.go.kr/nkp/trend/viewTrend.do>.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경제〉경제성장,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EC205>.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경제: 상품유통실태,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EC217>.

통일부 북한정보 포털, 경제>산업구조 및 생산성,

<http://nkinfo.unikorea.go.kr/nkp/overview/nkOverview.do?sumryMenuId=EC206>.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경제동향,

<http://nkinfo.unikorea.go.kr/nkp/trend/viewTrend.do>.

Kotra 해외시장뉴스, 북한정보,

<http://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10/globalBbsDataView.do?setIdx=247&dataIdx=133029&pageViewType=&column=title&search=변화하는%20북한의%20경제%20정책과%20주요%20분야%20동향&searchAreaCd=&searchNationCd=&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searchItemCode=&searchItemName=&page=1&row=10>.

NKchosun,

[http://nk.chosun.com/bbs/list.html?table=bbs\\_24&idxno=2993&page=4&total=282&sc\\_area=&sc\\_word=](http://nk.chosun.com/bbs/list.html?table=bbs_24&idxno=2993&page=4&total=282&sc_area=&sc_word=).

WTO Homepage, WTO membership→accessions→protocols of accessions, Protocols of accession for new members since 1995, including commitments in goods and services,

[https://www.wto.org/english/thewto\\_e/acc\\_e/completeacc\\_e.htm](https://www.wto.org/english/thewto_e/acc_e/completeacc_e.htm).



통일법제 Issue Paper 18-19-②

## 북한의 세계경제기구 가입에 관한 법적 쟁점

---

발행일 2018년 12월 31일

발행인 이 익 현

발행처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팩스 : (044)868-9913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